번역집

일본의 정부계약 관계법령



KiP 한국조달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PROCUREMENT

일본의 정부계약 관계법령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정부계약에 관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그 전에는 「예산회계법」의 일부로서 제6장에서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체계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현재까지도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회계법」에 하나의 장(章, 제4장)에 12개 조문으로, 하위 법령인 정령(政令) 「예산결산 및 회계령」에도 별도 장에 56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에 비해서는 매우 단순한 규율체계로 보인다.

또한, 조문의 대부분은 순수 계약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다루고 있는 실체법적 내용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계약 분쟁절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입법적 특징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분권화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추측해 본다.

우리나라의 법제와의 유사성을 미리 짐작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체계화된 규율체계를 기대하였다면 실망할 지도 모른다. 단순한 계약법령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정부(都道府県)에 분산된 복잡한 조달체계를 고려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한 왜곡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계약에 관한 기본법령을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부계약제도를 이해하고 깊이있는 연구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2026년 10월

한국조달연구원장 이상윤

「회계법」(会計法)

소화 22년 법률 제35호
영화 2년 4월 1일 시행

제4장 계약 第四章　契約

제29조 각성 각청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그 소관에 속하는 매매, 임대차, 도급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第二十九条　各省各庁の長は、第十条の規定によるほか、その所掌に係る売買、貸借、請負その他の契約に関する事務を管理する。

제29조의 2[1] ①각성 각청의 장은 정령(政令)[2]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조(前條)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각성 각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담당관(각성 각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前3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3]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관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담당관이라 한다.

第二十九条の二　各省各庁の長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前条の契約に関する事務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②各省各庁の長は、必要がある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前項の事

---

1) *제29조의 2는 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리나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과 유사*

2) *정령은 내각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법 체계의 구조는 법률 → 정령 → 성령의 순이며, 성령은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회계법」제4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사무의 위임과 같이 세입징수에 관해서도 계약사무와 같이 성, 청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성, 청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임*

務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③各省各庁の長は、必要がある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又は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契約担当官（各省各庁の長又は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職員をいう。以下同じ。）の事務の一部を分掌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④第四条の二第四項の規定は、前三項の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⑤第三項の規定により契約担当官の事務の一部を分掌する職員は、分任契約担当官という。

제29조의 3 ① 계약담당관 및 지출부담행위담당관[4](이하 '계약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매매, 임대차, 도급 및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신청을 받음으로써 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전항의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같은 항의 공고 방법, 기타 같은 항의 경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5]으로 정한다.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경쟁에 참가할 자가 소수여서 제1항의 경쟁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동항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6]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긴급한 필요로 인해 경쟁에 부칠 수 없는 경우 및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7]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에 관한 예정가격이 소액인 경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

4) *우리나라에서는「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지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대표적으로 정부계약의 체결)를 '지출원인행위'라 하며,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회계관직은 제22조에 규정하는 '재무관'(위임을 하는 경우 '분임 재무관' 등)이고,「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관(분임계약관 포함)'은 대표적인 지출원인행위인 정부계약을 담당하는 계약관직이므로 계약관은 '재무관'으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회계법에서는 회계사무와 계약사무를 동시에 규정하다 보니 계약관직인 '계약담당관'과 회계관직인 '지출부담행위담당관'을 실무상 혼선을 없도록 '계약담당관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5) *정령에 해당하는「예산결산 및 회계령」제70조 및 제71조 참조*

6)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는 경우는「예산결산 및 회계령」제94조 참조*

7)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예산결산 및 회계령」제99조 참조*

第二十九条の三　契約担当官及び支出負担行為担当官（以下「契約担当官等」という。）は、売買、貸借、請負その他の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おいては、第三項及び第四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公告して申込みをさせることにより競争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②前項の競争に加わろうとする者に必要な資格及び同項の公告の方法その他同項の競争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これを定める。

③契約の性質又は目的により競争に加わるべき者が少数で第一項の競争に付する必要がない場合及び同項の競争に付することが不利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競争に付するものとする。

④契約の性質又は目的が競争を許さない場合、緊急の必要により競争に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及び競争に付することが不利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随意契約によるものとする。

⑤契約に係る予定価格が少額であ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第一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競争に付し又は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의 4 ① 계약담당관 등은 전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자가 견적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보증금[8]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9].

② 전항의 보증금 납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 또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기타 담보의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の四　契約担当官等は、前条第一項、第三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競争に付そ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競争に加わろうとする者をして、その者の見積る契約金額の百分の五以上の保証金を納め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全部又は一部を納め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保証金の納付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債又は確実と認められる有価証券その他の担保の提供をもつて代え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의 5 ① 제29조의 3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이하 '경쟁'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경매에 부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

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토록 정하고 있으나 일본「회계법」은 '견적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이때 '견적하는 계약금액'은 입찰자가 자신의 의사로 입찰에서 제시할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입찰금액과 같은 의미임*

9)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77조 참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행하는 경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10)]

第二十九条の五　　第二十九条の三第一項、第三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競争（以下「競争」という。）は、特に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せり売りに付するときを除き、入札の方法をもつてこれ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前項の規定により入札を行なう場合においては、入札者は、その提出した入札書の引換え、変更又は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29조의 6 ① 계약담당관 등은 경쟁에 부치는 경우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여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다[11)]. 다만, 국가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12)]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자의 신청에 관계된 가격에 따라서는 그 자에 의해 당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 제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다른 자 중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를 당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

10)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임의로 변경, 교환, 취소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뿐만 아니라 입찰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우리나라 경우에도 계약예규인 「입찰유의서」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찰 취소를 허용하고 있음(예,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 등)*

11) *이 조의 법문에 의하면 '최저가격 낙찰제'를 원칙을 하는 것처럼 보임. 다만,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계약의 성질, 목적 등에 비추어 가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조건이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음을 볼 때, 가격, 성능·품질, 사후관리 등 다양한 입찰평가 요소(일종의 종합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

12)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1천만 엔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입찰자라도 그 입찰가격으로는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할 수 있는 '최저가격 낙찰'에 대한 보완 조항에 해당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4조, 제85조, 제89조 참조)*

②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재산과의 교환에 관한 계약, 그 밖에 그 성질 또는 목적상 전항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항[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이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것(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유리한 것)으로 신청을 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の六　契約担当官等は、競争に付する場合にお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契約の目的に応じ、予定価格の制限の範囲内で最高又は最低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を契約の相手方と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国の支払の原因となる契約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相手方となるべき者の申込みに係る価格によつては、その者により当該契約の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又はその者と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公正な取引の秩序を乱す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つて著しく不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予定価格の制限の範囲内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他の者のうち最低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を当該契約の相手方とすることができる。 ②国の所有に属する財産と国以外の者の所有する財産との交換に関する契約その他その性質又は目的から前項の規定により難い契約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価格及びその他の条件が国にとつて最も有利なもの（同項ただし書の場合にあつては、次に有利なもの）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を契約の相手方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제29조의 7 제29조의4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 중 낙찰자(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다음 조에서 같다)의 납부에 관계된 것은 그 자가 계약을 맺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第二十九条の七　第二十九条の四の規定により納付された保証金（その納付に代えて提供された担保を含む。）のうち、落札者（前条の規定により契約の相手方とする者をいう。以下次条において同じ。）の納付に係るものは、その者が契約を結ば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ものとする。

제29조의 8 ① 계약담당관 등은 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한,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3) 이 조항에서 '같은 항'은 앞의 문구인 '전항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에 비추어 볼 때 '전항'(제1항의 규정)을 의미함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아니하면 당해 계약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第二十九条の八　契約担当官等は、競争により落札者を決定したとき、又は随意契約の相手方を決定した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契約の目的、契約金額、履行期限、契約保証金に関する事項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契約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これ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規定により契約書を作成する場合においては、契約担当官等が契約の相手方とともに契約書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当該契約は、確定しないものとする。

제29조의 9 ① 계약담당관 등은 국가는 계약을 맺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연납이 인정되는 경우에 확실한 담보가 제공될 때, 그 자가 물품의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二十九条の九　契約担当官等は、国と契約を結ぶ者をして、契約金額の百分の十以上の契約保証金を納め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他の法令に基づき延納が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確実な担保が提供されるとき、その者が物品の売払代金を即納す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納め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②第二十九条の四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契約保証金の納付について、これを準用する。

제29조의 10 전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은 이를 납부한 자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에 대하여 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第二十九条の十　前条の規定により納付された契約保証金（その納付に代えて提供された担保を含む。）は、これを納付した者がその契約上の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損害の賠償又は違約金について契約で別段の定めをしたときは、その定めたところによるものとする。

제29조의 11 ① 계약담당관 등은 공사 또는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전항에 규정된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매입, 그 밖의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그 제공받는 급부의 완료 확인(급부 완료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공사 또는 제조의 기성 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 부분의 확인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14]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의 급부 완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당해 물품에 대해 파손, 변질, 성능 저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체,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의 특약이 있어 당해 급부 내용이 담보된다고 인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또는 전항의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각성 각청의 장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및 제2항의 검사를 당해 계약에 관계된 계약담당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관 등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공무원 외의 자에게 제1항의 감독 및 제2항의 검사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の十一　契約担当官等は、工事又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又は補助者に命じて、契約の適正な履行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監督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契約担当官等は、前項に規定する請負契約又は物件の買入れその他の契約につ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又は補助者に命じて、その受ける給付の完了の確認（給付の完了前に代価の一部を支払う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行なう工事若しくは製造の既済部分又は物件の既納部分の確認を含む。）をするため必要な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契約の目的たる物件の給付の完了後相当の期間内に当該物件につき破損、変質、性能の低下その他の事故が生じたときは取替え、補修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旨の特約があり、当該給付の内容が担保されると認められる契約につい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監督又は前項の検査の一部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④各省各庁の長は、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監督及び第二項の検査を、当該契約に係る契約担当官等及びその補助者以外の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又は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

⑤契約担当官等は、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の職員以外の者に第一項の監督及び第二項の検査を委託して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

14) *'전2항'은 앞의 두 개의 항으로 제1항 및 제2항 모두를 의미*

제29조의 12 계약담당관 등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 걸쳐 전기, 가스 또는 수도의 공급이나 전기통신 용역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 연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급부를 받아야 한다.[15)]

第二十九条の十二　契約担当官等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翌年度以降にわたり、電気、ガス若しくは水の供給又は電気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る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各年度におけるこれらの経費の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給付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15) *이 조항은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의 법적 근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국가계약법」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하고 있음*

「예산결산 및 회계령」(予算決算及び会計令)

소화 22년 칙령 제165호

제7장 계약 第七章　契約

제1절 총칙 第一節　総則

(계약 사무의 위임)

제68조 각성 각청의 장은「회계법」 제29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권한을 「내각부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89호) 제50조의 위원장 혹은 장관, 같은 법 제43조 혹은 제57조(「궁내청법」(소화 22년 법률 제70호)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방지분부국[16]의 장, 궁내청[17] 장관, 「궁내청법」 제17조 제1항의 지방지분부국의 장, 「국가행정조직법」(소화 23년 법률 제120호) 제6조의 위원장 혹은 장관, 동법 제9조의 지방지분부국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제139조의3 제3항에서 '외국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26조 제3항의 규정은 각성 각청의 장이 「회계법」제29조의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에 관한 사무의 위임 또는 분장이 다른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직 지정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契約事務の委任) 第六十八条　各省各庁の長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契約に関する事務を委任し、又は分掌させ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同

16) *'地方支分部局'은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예컨대, ○○지방조달청, □□지방노동청 등과 같음.*

17) *宮内庁은 천황 및 황실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국체 행사(의식)를 주관하는 일본 내각부 소속 국가 행정기관.*

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権限を、内閣府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五十条の委員長若しくは長官、同法第四十三条若しくは第五十七条（宮内庁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七十号）第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地方支分部局の長、宮内庁長官、宮内庁法第十七条第一項の地方支分部局の長、国家行政組織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号）第六条の委員長若しくは長官、同法第九条の地方支分部局の長又はこれらに準ずる職員（第百三十九条の三第三項において「外局の長等」という。）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第二十六条第三項の規定は、各省各庁の長が会計法第二十九条の二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契約に関する事務を委任し、又は分掌させる場合に、第二十六条第四項の規定は、同法第二十九条の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四条の二第四項の規定により当該契約に関する事務の委任又は分掌が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ついて官職の指定により行なわれる場合に、それぞれ準用する。

(계약심사위원의 지정)

제69조 ① 각성 각청의 장은 당해 각성각청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각성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성 각청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은 당해 각성 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필요한 때에는 계약담당관 등이 제86조 제2항(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구한 경우에 그 의견을 표시할 공무원(이하 '계약심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성 각청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각성각청 소속 공무원을 계약심사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그 관직에 대하여 미리 당해 다른 각성 각청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 각성 각청 또는 다른 각성 각청에 두어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그 관직에 있는 자를 계약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그 지정하고자 하는 관직에 대하여 있으면 족하다.

④ 계약심사위원은 계약담당관 등 1인당 3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계약담당관 등에 관한 것을 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심사위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 계약담당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契約審査委員の指定)

第六十九条　各省各庁の長は、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又は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のうちから、各省各庁の長の委任を受けた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は、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のうちから、必

要があるときは、契約担当官等が第八十六条第二項（第九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意見を求めた場合にその意見を表示すべき職員（以下「契約審査委員」という。）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各省各庁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を契約審査委員に指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職員及びその官職について、あらかじめ、当該他の各省各庁の長の同意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3.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当該各省各庁又は他の各省各庁に置かれた官職を指定することにより、その官職にある者を契約審査委員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同意は、その指定しようとする官職についてあれば足りる。

4.契約審査委員は、一の契約担当官等について三人とする。ただし、他の契約担当官等に係るものについて兼ねることを妨げない。

5.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契約審査委員を指定したときは、その旨を関係の契約担当官等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2절 일반경쟁계약 第二節　一般競争契約

제1관 일경쟁참가자의 자격 第一款　一般競争参加者の資格

(일반 경쟁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제70조 계약담당관 등은 매매, 임대차, 도급 및 기타 계약에 대하여 「회계법」 제29조의3 제1항의 경쟁(이하 '일반경쟁'이라 한다)에 부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가시킬 수 없다.

1. 당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자
2.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77호) 제32조 제1항 각 호에 게재된 자

（一般競争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者）

第七十条　契約担当官等は、売買、貸借、請負その他の契約につき会計法第二十九条の三第一項の競争（以下「一般競争」という。）に付するときは、特別の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契約を締結する能力を有しない者

二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い者

三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第三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

(일반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자)

제71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18)]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로 공사, 제조 기타 역무를 조잡하게 수행하거나, 물품의 품질 혹은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공정한 경쟁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정한 가격을 해치거나 혹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합한 때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는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한 때
4. 감독 또는 검사 실시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계약에 따라 계약 후에 대가의 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대가의 청구를 고의로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한 때
7. 이 항(이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자를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한 때

② 계약담당관 등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입찰대리인으로 사용하는 자를 일반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一般競争に参加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者)

第七十一条　契約担当官等は、一般競争に参加しようとす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者について三年以内の期間を定めて一般競争に参加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その者を代理人、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として使用する者についても、また同様とする。

一　契約の履行に当たり故意に工事、製造その他の役務を粗雑に行い、又は物件の品質若しくは数量に関して不正の行為をしたとき。

二　公正な競争の執行を妨げたとき又は公正な価格を害し若しくは不正の利益を得るために連合したとき。

---

18) *이 조는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유사해 보임. 그러나 법적 성질, 각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都道府県) 등 실무현장에서의 작용하는 명칭, 제한사유, 법적 효과(특히, 확장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규정만으로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유사한 제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정지(指名停止), 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지명정지(競争入札参加有資格者指名停止), 입찰참가정지(入札参加停止) 등으로 불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각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고시를 참조하기 바람.*

三　落札者が契約を結ぶこと又は契約者が契約を履行することを妨げたとき。
四　監督又は検査の実施に当たり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たとき。
五　正当な理由がなくて契約を履行しなかつたとき。
六　契約により、契約の後に代価の額を確定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代価の請求を故意に虚偽の事実に基づき過大な額で行つたとき。
七　この項(この号を除く。)の規定により一般競争に参加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者を契約の締結又は契約の履行に当たり、代理人、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として使用したとき。
2　契約担当官等は、前項の規定に該当する者を入札代理人として使用する者を一般競争に参加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각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일반경쟁참가자의 자격)

제72조 ① 각성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 제조, 물건의 매입 기타 계약의 종류마다 그 금액 등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판매 등의 실적, 종업원의 수, 자본의 액 기타 경영의 규모 및 경영의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기다려 그 자가 당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한 때에는 그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各省各庁の長が定める一般競争参加者の資格)
第七十二条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必要があるときは、工事、製造、物件の買入れその他についての契約の種類ごとに、その金額等に応じ、工事、製造又は販売等の実績、従業員の数、資本の額その他の経営の規模及び経営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一般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前項の規定により資格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に又は随時に、一般競争に参加しようとする者の申請をまつて、その者が当該資格を有す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第一項の資格を有する者の名簿を作成するものとする。
4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一般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を定めたときは、その基本となるべき事項並びに第二項に規定する申請の時期及び方法等について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계약담당관 등이 정하는 일반경쟁참가자의 자격)

제73조 계약담당관 등은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당해 경쟁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다시 당해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경쟁을 행하게 할 수 있다.

(契約担当官等が定める一般競争参加者の資格)
第七十三条　契約担当官等は、一般競争に付そ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契約の性質又は目的により、当該競争を適正かつ合理的に行なう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の資格を有する者につき、さらに当該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を定め、その資格を有する者により当該競争を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

제2관 공고 및 경쟁 第二款　公告及び競争

(입찰의 공고)

제74조 계약담당관 등은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관보, 신문,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入札の公告)
第七十四条　契約担当官等は、入札の方法により一般競争に付そうとするときは、その入札期日の前日から起算して少なくとも十日前に官報、新聞紙、掲示その他の方法により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急を要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期間を五日までに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입찰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

제75조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

3. 계약조항을 제시하는 장소

4. 경쟁집행의 장소 및 일시

5.「회계법」 제29조의4 제1항의 보증금(이하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入札について公告する事項）
第七十五条　前条の規定による公告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競争入札に付する事項
二　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に関する事項
三　契約条項を示す場所
四　競争執行の場所及び日時
五　会計法第二十九条の四第一項の保証金（以下「入札保証金」という。）に関する事項

（입찰의 무효）

제76조 계약담당관 등은 제74조의 공고에 있어 당해 공고에 제시한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入札の無効）
第七十六条　契約担当官等は、第七十四条の公告において、当該公告に示した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のない者のした入札及び入札に関する条件に違反した入札は無効とする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입찰보증금 납부의 면제）

제77조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입찰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2. 제72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入札保証金の納付の免除）
第七十七条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四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次に掲げる場合

においては、入札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納め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一　一般競争に参加しようとする者が保険会社との間に国を被保険者とする入札保証保険契約を結んだとき。
二　第七十二条第一項の資格を有する者による一般競争に付する場合において、落札者が契約を結ばないこととな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입찰보증금에 대신하는 담보）

제78조 ① 「회계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관 등이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는 담보는 국채 외에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1. 정부의 보증이 있는 채권
2. 은행,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농림중앙금고 또는 전국을 지구로 하는 신용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채권
3. 은행이 발행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수표
4. 기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로 재무대신이 정하는 것

② 전항 담보의 가치 및 그 제공 절차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入札保証金に代わる担保）

第七十八条　会計法第二十九条の四第二項の規定により契約担当官等が入札保証金の納付に代えて提供させることができる担保は、国債のほか、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政府の保証のある債券
二　銀行、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農林中央金庫又は全国を地区とする信用金庫連合会の発行する債券
三　銀行が振り出し又は支払保証をした小切手
四　その他確実と認められる担保で財務大臣の定めるもの

2　前項の担保の価値及びその提供の手続は、別に定めるものを除くほか、財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예정가격의 작성）

제79조 계약담당관 등은 그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제91조 제1항의 경쟁에 있어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각각의 재산 가격의 차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경쟁에 있어서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을

당해 사항에 관한 사양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을 그 내용이 인지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개찰할 때에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19)]

(予定価格の作成)

第七十九条　契約担当官等は、その競争入札に付する事項の価格 (第九十一条第一項の競争にあつては交換しようとするそれぞれの財産の価格の差額とし、同条第二項の競争にあつては財務大臣の定めるものとする。以下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を当該事項に関する仕様書、設計書等によつて予定し、その予定価格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をその内容が認知できない方法により、開札の際これを開札場所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제80조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지속하여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거래의 실례 가격, 수급 상황, 이행의 난이, 수량의 다과, 이행 기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予定価格の決定方法)

第八十条　予定価格は、競争入札に付する事項の価格の総額につい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一定期間継続してする製造、修理、加工、売買、供給、使用等の契約の場合においては、単価についてその予定価格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予定価格は、契約の目的となる物件又は役務について、取引の実例価格、需給の状況、履行の難易、数量の多寡、履行期間の長短等を考慮して適正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개찰）

제81조 계약담당관 등은 공고에 제시한 경쟁 집행의 장소 및 일시에 입찰자를 참관하게 하여 개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입찰자가 참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19) *일본은 예정가격 비공개 제도를 고수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입찰 시 기초금액 공개, 그에 따른 복수예비가격 산정, 입찰참가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무작위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예정가격의 공개는 아니지만 범위를 추정할 수 있게 됨.*

(開札)
第八十一条　契約担当官等は、公告に示した競争執行の場所及び日時に、入札者を立ち会わせて開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入札者が立ち会わないときは、入札事務に関係のない職員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재입찰）

제82조 계약담당관 등은 개찰을 한 경우에 있어, 각자의 입찰 중 예정가격 범위내에 들어온 가격의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

（再度入札）
第八十二条　契約担当官等は、開札をした場合において、各人の入札のうち予定価格の制限に達した価格の入札がないときは、直ちに、再度の入札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3관 낙찰자의 결정 등 第三款　落札者の決定等

（낙찰자의 결정）

제83조 ① 낙찰이 되어야 할 동일한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관 등은 즉시 당해 입찰자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하여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당해 입찰자 중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落札者の決定）
第八十三条　落札となるべき同価の入札をした者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契約担当官等は、直ちに、当該入札者にくじを引かせて落札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入札者のうちくじを引かない者があるときは、これに代わつて入札事務に関係のない職員にくじを引かせることができる。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

제84조 「회계법」 제29조의 6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1천만 엔(각성 각청의 장이 재무대신과 협의하여 1천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으로 한다.

(最低価格の入札者を落札者としないことができる契約)

第八十四条　会計法第二十九条の六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国の支払の原因となる契約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は、予定価格が一千万円(各省各庁の長が財務大臣と協議して一千万円を超える金額を定めたときは、当該金額)を超える工事又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とする。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절차)

제85조 각성 각청의 장은 「회계법」 제29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전조에 규정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자의 신청에 관계된 가격에 따라서는 그 자에 의해 당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20)21)]

---

20) *1999.4.8일자에 발령한 재무성 통달(通達, 내부업무처리기준)인*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 *및 2026.3.31일 최종 개정된*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의 운용방침 등에 대하여」****에 따르면, ❶ 계약담당관 등이 정하는 조사기준가격에 못 미치게 투찰한 경우, ❷ 해당 입찰결과를 유보하고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여 투찰한 해당 입찰자(들)의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됨*

【❶ 계약담당관이 정하는 조사기준가격비율】

위 통달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75% ~92% 범위내에서 계약담당관 등이 정하는 ***조사기준가격비율****은 예정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공사비목의 내역별로 직접공사비 97%, 공통가설비 90%, 현장관리비 90% 일반관리비 등 68%를 적용하여 합산한 공사비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 공사도급계약 조사기준가격비율

비율 (%)	=	**조사기준가격**(직접공사비 × 97% + 공통가설비×90%+ 현장관리비×90%+일반관리비 등 68%) + **해당 소비세액 합계액**
		예정가격

** 조사기준가격비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일종의 삭감된 예정가격이 최소 75%, 최대 92% 범위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92%, 75%로 조사기준가격비율을 정하기 위함임.*

【❶-1 조사기준가격 산정】

산정된 조사기준가격비율에 다시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예결령 제79조의 예정가격조서에 별도로 「조사기준가격 ○○엔」으로 기재함.

【❷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조치(입찰유보 및 계약이행가능성 조사 및 심사】

입찰 결과 최저가 입찰자의 투찰가격이 조사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입찰결과를 보류한 후 제86조에서 제88조에 따라 상세조사, 계약심사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음.

(契約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おそれがあるため最低価格の入札者を落札者としない場合の手続)

第八十五条　各省各庁の長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六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必要があるときは、前条に規定する契約について、相手方となるべき者の申込みに係る価格によつては、その者により当該契約の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の基準を作成するものとする。

제86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제84조에 규정된 계약에 관한 경쟁을 한 경우에 있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자의 신청에 관계된 가격이 전조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 의해 당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전항의 조사 결과, 그 자에 의해 당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 및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을 계약심사위원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第八十六条　契約担当官等は、第八十四条に規定する契約に係る競争を行なつた場合において、契約の相手方となるべき者の申込みに係る価格が、前条の基準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ときは、その者により当該契約の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おそれ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契約担当官等は、前項の調査の結果、その者により当該契約の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おそれ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その調査の結果及び自己の意見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を契約審査委員に提出し、その意見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87조 계약심사위원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서면에 의해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八十七条　契約審査委員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契約担当官等から意見を求められたときは、必要な審査をし、書面によつて意見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8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계약심사위원의 의견 중 다수가 자기의 의견과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다른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이하 '차순위자'라 한다)를 낙찰자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계약심사위원의 의견 중 다수가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

21) *재무성 통달(2종)에 대해서는 별첨 번역본 참조*

있어서도,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자에 의해 당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第八十八条　契約担当官等は、前条の規定により表示された契約審査委員の意見のうちの多数が自己の意見と同一で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予定価格の制限の範囲内で最低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を落札者とせず、予定価格の制限の範囲内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他の者のうち最低の価格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以下「次順位者」という。）を落札者とするものとする。

2　契約担当官等は、契約審査委員の意見のうちの多数が自己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おいても、当該契約の相手方となるべき者により当該契約の内容に適合した履行がされないおそれがあると認めたことについて合理的な理由があるときは、次順位者を落札者とすることができる。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절차）

제89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제84조에 규정된 계약에 관한 경쟁을 한 경우에 있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 및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을 당해 각성 각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으로 한다.

（公正な取引の秩序を乱す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ため最低価格の入札者を落札者としない場合の手続）

第八十九条　契約担当官等は、第八十四条に規定する契約に係る競争を行なつた場合において、契約の相手方となるべき者と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公正な取引の秩序を乱す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つて著しく不適当であると認めたときは、その理由及び自己の意見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を当該各省各庁の長に提出し、その者を落札者としないことについて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契約担当官等は、前項の承認があつたときは、次順位者を落札者とするものとする。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제출）

제90조 계약담당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당해 경쟁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각 호에 게재된 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각성 각청의 장을 거쳐 재무대신 및 회계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한 때: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 결과 및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및 제87조에 규정된 계약심사위원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2. 전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한 때: 동조에 규정된 이유 및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및 당해 각성각청 장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最低入札者を落札者としなかつた場合の書面の提出）

第九十条　契約担当官等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遅滞なく、当該競争に関する調書を作成し、当該各号に掲げる書面の写しを添え、これを当該各省各庁の長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会計検査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八十八条の規定により次順位者を落札者としたとき。　第八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調査の結果及び自己の意見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並びに第八十七条に規定する契約審査委員の意見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

二　前条の規定により次順位者を落札者としたとき。　同条に規定する理由及び自己の意見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並びに当該各省各庁の長の承認があつたことを証する書面

（교환 등에 관한 계약을 경쟁에 붙여 실시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91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재산과의 교환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의 견적가격 차액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신청을 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계약으로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각성 각청의 장이 재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그 밖의 조건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신청을 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22)]

（交換等についての契約を競争に付して行なう場合の落札者の決定）

第九十一条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り、国の所有に属する財産と国以外の者の所有する財産との交換に関する契約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財産の見積価格の差額が国にとつて最も有利な申込みをした者を落札者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性質又は目的から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難い契約で前項に規定するもの以外のものについては、各省各庁の長が財務大臣に

22) *이 항은「회계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예외를 규정한 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근거가 되는 조항임*

協議して定めるところにより、価格その他の条件が国にとつて最も有利なものをもつて申込みをした者を落札者とすることができる。

（재공고입찰의 공고 기간）

제92조 계약담당관 등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다시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74조의 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再度公告入札の公告期間）

第九十二条　契約担当官等は、入札者若しくは落札者がない場合又は落札者が契約を結ばない場合において、さらに入札に付そうとするときは、第七十四条の公告の期間を五日までに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경매）

제93조 계약담당관 등은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せり売り）

第九十三条　契約担当官等は、動産の売払いにつ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本節の規定に準じ、せり売り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제3절 지명경쟁계약 第三節　指名競争契約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제94조 ①「회계법」 제29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재된 경우로 한다.

1. 예정가격이 8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제조를 시킬 때
2. 예정가격이 5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입할 때
3. 예정 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3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임차할 때
4. 예정가격이 2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5. 예정 임대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여할 때
6.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및 물건의 임대차 이외의 계약으로 그 예정가격이 35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

②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붙이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指名競争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第九十四条　会計法第二十九条の三第五項の規定により指名競争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予定価格が八百万円を超えない工事又は製造をさせるとき。 二　予定価格が五百万円を超えない財産を買い入れるとき。 三　予定賃借料の年額又は総額が三百万円を超えない物件を借り入れるとき。 四　予定価格が二百万円を超えない財産を売り払うとき。 五　予定賃貸料の年額又は総額が百万円を超えない物件を貸し付けるとき。 六　工事又は製造の請負、財産の売買及び物件の貸借以外の契約でその予定価格が三百五十万円を超えないものをするとき。 2　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は、指名競争に付することを妨げない。

（지명경쟁 참가자의 자격）

제95조 ① 각성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제조,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계약의 종류마다 그 금액 등에 따라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명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자격이 제72조 제1항의 자격과 동일한 등의 사유로,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심사 및 명부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의 심사 및 명부의 작성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심사 및 명부의 작성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연간 계약 건수가 근소한 것,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계약담당관 등에 관계된 지명경쟁에 대해서는, 당해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그 심사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와 다른 정함을 하거나 당해 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指名競争参加者の資格）

第九十五条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工事、製造、物件の買入れその他についての契約の種類ごとに、その金額等に応じ、第七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指名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七十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が前項の規定により資格を定めた場合に準用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資格が第七十二条第一項の資格と同一である等のため、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る資格の審査及び名簿の作成を要し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資格の審査及び名簿の作成は、行なわず、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る資格の審査及び名簿の作成をもつて代えるものとする。

4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年間の契約の件数が僅少であることその他特別の事情がある契約担当官等に係る指名競争については、当該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及びその審査に関し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ところと異なる定めをし、又は当該競争に参加する資格を有する者の名簿を作成しないことができる。

（지명 기준）

제96조 ①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담당관 등이 전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경쟁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재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指名基準）

第九十六条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契約担当官等が前条の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競争に参加する者を指名する場合の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前項の基準を定めたときは、財務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경쟁 참가자의 지명）

제97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지명경쟁에 붙일 때에는 제95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전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경쟁에 참가할 자를 가급적 10인 이상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75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그 지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競争参加者の指名）

第九十七条　契約担当官等は、指名競争に付するときは、第九十五条の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前条第一項の基準により、競争に参加する者をなるべく十人以上指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第七十五条第一号及び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その指名す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반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준용한다.

（一般競争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九十八条　第七十条、第七十一条及び第七十六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の規定は、指名競争の場合に準用する。

제4절 수의계약 第四節　随意契約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

제99조 「회계법」 제2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로 한다.

1. 국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때
2. 예정가격이 4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제조를 시킬 때
3. 예정가격이 3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입할 때
4. 예정 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5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임차할 때
5. 예정가격이 1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6. 예정 임대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여할 때
7.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및 물건의 임대차 이외의 계약으로 그 예정가격이 20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
8. 운송 또는 보관을 시킬 때
9.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기타 특별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설립 행위로 설립된 법인 중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10. 농장, 공장, 학교, 시험소, 형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생산에 관계된 물품을 매각할 때
11. 국가가 수요하는 물품의 제조, 수리, 가공 또는 납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매각할 때
1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할 때

13.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국가의 생산에 관계된 건축 자재를 매각할 때
14. 이재민 또는 그 구호를 행하는 자에게 재해의 구호에 필요한 물건을 매각하거나 대여할 때
15. 외국에서 계약을 할 때
16. 도도부현 및 시정촌 기타 공법인, 공익법인,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16의 2. 자선을 위해 설립한 구제시설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임차하거나 자선을 위해 설립한 구제시설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받을 때

17. 개척지역 내의 토목공사를 그 입주자의 공동도급에 붙일 때
18.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상공조합 또는 상공조합연합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이들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할 때
19. 학술 또는 기예의 보호장려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매각하거나 대여할 때
20. 산업 또는 개척사업의 보호장려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매각・대여하거나 생산자로부터 직접 그 생산에 관계된 물품을 매입할 때
21.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의 용에 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매각・대여하거나 신탁할 때
22. 토지, 건물 또는 임야 혹은 그 산물을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할 때
23. 사업경영상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물품을 매입・제조시키거나 조림을 시키고 또는 토지・건물을 임차할 때
24. 법률 또는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하게 할 때
25.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위탁한 시험연구의 성과에 관계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일부를 당해 시험연구를 수탁한 자에게 매각할 때

(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場合)

第九十九条　会計法第二十九条の三第五項の規定により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国の行為を秘密にする必要があるとき。

二　予定価格が四百万円を超えない工事又は製造をさせるとき。

三　予定価格が三百万円を超えない財産を買い入れるとき。

四　予定賃借料の年額又は総額が百五十万円を超えない物件を借り入れるとき。
五　予定価格が百万円を超えない財産を売り払うとき。
六　予定賃貸料の年額又は総額が五十万円を超えない物件を貸し付けるとき。
七　工事又は製造の請負、財産の売買及び物件の貸借以外の契約でその予定価格が二百万円を超えないものをするとき。
八　運送又は保管をさせるとき。
九　沖縄振興開発金融公庫その他特別の法律により特別の設立行為をもつて設立された法人のうち財務大臣の指定するものとの間で契約をするとき。
十　農場、工場、学校、試験所、刑務所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の生産に係る物品を売り払うとき。
十一　国の需要する物品の製造、修理、加工又は納入に使用させるため必要な物品を売り払うとき。
十二　法律の規定により財産の譲与又は無償貸付け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その財産を売り払い又は有償で貸し付けるとき。
十三　非常災害による罹災者に国の生産に係る建築材料を売り払うとき。
十四　罹災者又はその救護を行なう者に災害の救助に必要な物件を売り払い又は貸し付けるとき。
十五　外国で契約をするとき。
十六　都道府県及び市町村その他の公法人、公益法人、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から直接に物件を買い入れ又は借り入れるとき。
十六の二　慈善のため設立した救済施設から直接に物件を買い入れ若しくは借り入れ又は慈善のため設立した救済施設から役務の提供を受けるとき。
十七　開拓地域内における土木工事をその入植者の共同請負に付するとき。
十八　事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若しくは協同組合連合会又は商工組合若しくは商工組合連合会の保護育成のためこれらの者から直接に物件を買い入れるとき。
十九　学術又は技芸の保護奨励のため必要な物件を売り払い又は貸し付けるとき。
二十　産業又は開拓事業の保護奨励のため、必要な物件を売り払い若しくは貸し付け、又は生産者から直接にその生産に係る物品を買い入れるとき。
二十一　公共用、公用又は公益事業の用に供するため必要な物件を直接に公共団体又は事業者に売り払い、貸し付け又は信託するとき。
二十二　土地、建物又は林野若しくはその産物を特別の縁故がある者に売り払い又は貸し付けるとき。
二十三　事業経営上の特別の必要に基づき、物品を買い入れ若しくは製造させ、造林をさせ又は土地若しくは建物を借り入れるとき。
二十四　法律又は政令の規定により問屋業者に販売を委託し又は販売させるとき。
二十五　国が国以外の者に委託した試験研究の成果に係る特許権及び実用新案権の一部を当該試験研究を受託した者に売り払うとき。

제99조의 2 계약담당관 등은 경쟁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는 때, 또는 재입찰을 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 및 이행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에 붙일 때에 정한 예정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第九十九条の二　契約担当官等は、競争に付しても入札者がないとき、又は再度の入札をしても落札者がないときは、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契約保証金及び履行期限を除くほか、最初競争に付するときに定めた予定価格その他の条件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9조의 3 계약담당관 등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제한 내에서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에 붙일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23]

第九十九条の三　契約担当官等は、落札者が契約を結ばないときは、その落札金額の制限内で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履行期限を除くほか、最初競争に付するときに定めた条件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분할계약）

제99조의 4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가격 또는 금액의 제한 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24]

（分割契約）
第九十九条の四　前二条の場合においては、予定価格又は落札金額を分割して計算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限り、当該価格又は金額の制限内で数人に分割して契約をすることができる。

（예정가격의 결정）

제99조의 5 계약담당관 등은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0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정가격은 정하여야 한다.

---

23) *이 조항은 계약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사업의 지연방지, 기존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경쟁의 효과를 유지하는 등 재정낭비 요인도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우리나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

24) *제99조의 2의 규정(반복적으로 유찰) 또는 제99조의 3의 규정(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또는 기존 낙찰자의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허용한 것도 별도로 사업금액을 증액(또는 계약물량 감축 등)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여 계약행정의 효율성이나 공공사업의 지연방지 등의 차원에서 허용한 것으로 판단. 우리나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29조(분할수의계약)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음.*

（予定価格の決定）
第九十九条の五　契約担当官等は、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第八十条の規定に準じて予定価格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견적서의 징구）

제99조의 6 계약담당관 등은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見積書の徴取）
第九十九条の六　契約担当官等は、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ときは、なるべく二人以上の者から見積書を徴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절 계약의 체결　第五節　契約の締結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00조 ① 「회계법」 제29조의 8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관 등이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한 및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게재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해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 이행의 장소
2. 계약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의 시기 및 방법
3. 감독 및 검사
4. 이행의 지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연이자, 위약금 그 밖에 손해배상금, 이행의 완결, 대금의 감액 및 계약의 해제
5. 위험부담
6.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그 밖에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세목은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契約書の記載事項）
第百条　会計法第二十九条の八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契約担当官等が作成すべき契約書には、契約

の目的、契約金額、履行期限及び契約保証金に関する事項の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契約の性質又は目的により該当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契約履行の場所

二　契約代金の支払又は受領の時期及び方法

三　監督及び検査

四　履行の遅滞その他債務の不履行の場合における遅延利息、違約金その他の損害金、履行の追完、代金の減額及び契約の解除

五　危険負担

六　契約に関する紛争の解決方法

七　その他必要な事項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契約書の記載その他その作成に関する細目は、財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00조의 2 ① 「회계법」 제29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재된 경우로 한다.

1. 제72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일반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 혹은 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이 250만 엔(외국에서 계약할 때에는 350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
2. 경매에 부칠 때
3.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대금을 즉시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제1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각성 각청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② 각성 각청의 장은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무대신은 전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契約書の作成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第百条の二　会計法第二十九条の八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契約書の作成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第七十二条第一項の資格を有する者による一般競争契約又は指名競争契約若しくは随意契約で、契約金額が二百五十万円(外国で契約するときは、三百五十万円)を超えないものをするとき。

二　せり売りに付するとき。

三　物品を売り払う場合において、買受人が代金を即納してその物品を引き取るとき。
四　第一号に規定するもの以外の随意契約について各省各庁の長が契約書を作成する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
2　各省各庁の長は、前項第四号の規定による認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財務大臣は、前項の協議が整つたときは、会計検査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계약보증금 납부의 면제）

제100조의 3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 9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게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2.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 은행, 농림중앙금고 기타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3. 제72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일반경쟁에 붙이거나, 지명경쟁 혹은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契約保証金の納付の免除）
第百条の三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九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契約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納め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一　契約の相手方が保険会社との間に国を被保険者とする履行保証保険契約を結んだとき。
二　契約の相手方から委託を受けた保険会社、銀行、農林中央金庫その他財務大臣の指定する金融機関と工事履行保証契約を結んだとき。
三　第七十二条第一項の資格を有する者による一般競争に付し、若しくは指名競争若しくはせり売りに付し、又は随意契約による場合において、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는 담보）

제100조의 4 제78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契約保証金に代わる担保）
第百条の四　第七十八条の規定は、契約担当官等が契約保証金の納付に代えて担保を提供させる場合に準用する。

제6절 계약의 이행 第六節　契約の履行

(매각대금의 완납 시기)

제101조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은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도의 때까지 또는 이전의 등기 혹은 등록의 때까지 완납하게 하여야 한다.

(売払代金の完納時期)
第百一条　国の所有に属する財産の売払代金は、法律又は政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その引渡しの時まで又は移転の登記若しくは登録の時までに、完納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대여료의 납부 시기)

제101조의 2 재산의 대여료는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기간이 6개월 이상에 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선납하게 할 수 있다.

(貸付料の納付時期)
第百一条の二　財産の貸付料は、法律又は政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前納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貸付期間が六月以上にわたるものについては、分割して定期に前納させることができる。

(감독의 방법)

제101조의 3 「회계법」 제29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공사 또는 제조 기타에 관한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이하 본 절에서 '감독'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관 등이 직접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입회, 지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監督の方法)
第百一条の三　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一項に規定する工事又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の適正な履行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監督(以下本節において「監督」という。)は、契約担当官等が、自ら又は補助者に命じて、立会い、指示その他の適切な方法によ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

（검사의 방법）

제101조의 4 「회계법」 제29조의 11 제2항에 규정된 공사 혹은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매입 기타 계약에 관한 급부의 완료 확인（급부의 완료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공사 혹은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건의 기납부분의 확인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이하 이 절에서 ‘검사’라 한다）는 계약담당관 등이 직접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検査の方法）
第百一条の四　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二項に規定する工事若しく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又は物件の買入れその他の契約についての給付の完了の確認（給付の完了前に代価の一部を支払う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行なう工事若しくは製造の既済部分又は物件の既納部分の確認を含む。）をするため必要な検査（以下本節において「検査」という。）は、契約担当官等が、自ら又は補助者に命じて、契約書、仕様書及び設計書その他の関係書類に基づいて行なうものとする。

（검사의 일부 생략）

제101조의 5 「회계법」 제29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특약에 따라 급부의 내용이 담보된다고 인정되는 계약 중 재무대신이 정하는 물건의 매입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수량 이외의 것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検査の一部省略）
第百一条の五　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三項に規定する特約により給付の内容が担保されると認められる契約のうち財務大臣の定める物件の買入れに係るものについては、数量以外のものの検査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감독 및 검사를 계약담당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직원에게 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등）

제101조의 6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은 각성각청의 장이 「회계법」 제29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에 관계된 계약담당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 제26조 제3항의 규정은 각성 각청의 장이 동법 제29조의1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 각성 각청 또는 다른 각성 각청에 두어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그 관직에 있는 자에게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그 지정하고자 하는 관직 및 행하게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③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감독 또는 검사를 당해 계약에 관계된 계약담당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당해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각성 각청 소속의 직원에게 행하게 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계약담당관 등에게 그 뜻 및 당해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하기로 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을, 당해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하기로 한 직원에게 관계된 계약담당관 등의 관직 및 성명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監督及び検査を契約担当官等及びその補助者以外の職員に行なわせる場合の手続等）

第百一条の六　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は、各省各庁の長が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四項の規定により当該契約に係る契約担当官等及びその補助者以外の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場合に、第二十六条第三項の規定は、各省各庁の長が同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四項の規定により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場合に、それぞれ準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当該各省各庁又は他の各省各庁に置かれた官職を指定することにより、その官職にある者に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同意は、その指定しようとする官職及び行なわせようとする事務の範囲についてあれば足りる。

3　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は、監督又は検査を当該契約に係る契約担当官等及びその補助者以外の当該各省各庁所属の職員又は他の各省各庁所属の職員に行なわせることとしたときは、当該契約担当官等にその旨並びに当該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こととした職員の官職及び氏名を、当該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こととした職員に関係の契約担当官等の官職及び氏名を、それぞれ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의 겸직 금지）

제101조의 7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검사를 명령받은 보조자 및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명령받은 직원의 직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감독을 명령받은 보조자 및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감독을 명령받은 직원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監督の職務と検査の職務の兼職禁止）
第百一条の七　契約担当官等から検査を命ぜられた補助者及び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から検査を命ぜられた職員の職務は、特別の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契約担当官等から監督を命ぜられた補助者及び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から監督を命ぜられた職員の職務と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감독 및 검사의 위탁）

제101조의 8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 11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 그 밖의 이유로 국가의 직원에 의해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직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監督及び検査の委託）
第百一条の八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一第五項の規定により、特に専門的な知識又は技能を必要とすることその他の理由により国の職員によつて監督又は検査を行なうことが困難であり又は適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国の職員以外の者に委託して当該監督又は検査を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

（검사조서의 작성）

제101조의 9 ① 계약담당관 등,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검사를 명령받은 보조자 및 각성 각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명 받은 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검사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을 할 수 없다.

（検査調書の作成）
第百一条の九　契約担当官等、契約担当官等から検査を命ぜられた補助者及び各省各庁の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職員から検査を命ぜられた職員は、検査を完了した場合においては、財務大臣の定める場合を除くほか、検査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調書を作成すべき場合においては、当該検査調書に基づかなければ、支払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부분급의 한도액）

제101조의 10 계약에 따라 공사 혹은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에 관계된 기성 부분 또는 물건의 매입계약에 관계된 기납부분에 대하여, 그 완공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지급금액은, 공사 또는 제조 기타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물건의 매입계약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 혹은 제조 기타에 관한 도급계약에 관계된 완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部分払の限度額）
第百一条の十　契約により、工事若しく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に係る既済部分又は物件の買入契約に係る既納部分に対し、その完済前又は完納前に代価の一部を支払う必要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支払金額は、工事又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にあつてはその既済部分に対する代価の十分の九、物件の買入契約にあつてはその既納部分に対する代価をこえ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性質上可分の工事又は製造その他についての請負契約に係る完済部分にあつては、その代価の全額まで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제7절 보칙 第七節　雑則

（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고 등）

제102조 ① 계약담당관 등은 그 취급에 관계된 계약에 관하여, 제71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에 의해 당해 각성 각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성 각청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 그 보고에 관계된 자가 제71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을 재무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대신은 전항의 서면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취합하여 관계 각성 각청의 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第百二条　契約担当官等は、その取扱いに係る契約に関し、第七十一条の規定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者があつたときは、財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事実を詳細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により当該各省各庁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各省各庁の長は、前項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報告に係る者が第七十一条の規定に該当すると認めたときは、その事実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を財務大臣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財務大臣は、前項の書面の送付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取りまとめて関係の各省各庁の長に送付するものとする。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제102조의 2 계약담당관 등은 「회계법」 제29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걸쳐, 다음에 게재된 전기・가스 혹은 수도 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그 공급 또는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
2.「가스사업법」 제2조 제12항에 규정된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
3.「수도법」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수
4.「전기통신사업법」(소화 59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재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長期継続契約ができるもの)
第百二条の二　契約担当官等は、会計法第二十九条の十二の規定により、翌年度以降にわたり、次に掲げる電気、ガス若しくは水又は電気通信役務について、その供給又は提供を受ける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電気事業法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に規定する電気事業者が供給する電気
二　ガス事業法第二条第十二項に規定するガス事業者が供給するガス
三　水道法第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水道事業者又は工業用水道事業法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工業用水道事業者が供給する水
四　電気通信事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五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事業者が提供する電気通信役務(財務大臣の定めるものを除く。)

(경쟁참가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무대신과의 협의)

제102조의 3 각성 각청의 장은 제72조 제1항의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제85조의 기준 혹은 제95조 제1항의 지명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하고자 할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그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인 때에는 당해 협의는 그 자격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競争参加者の資格等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の財務大臣への協議）
第百二条の三　各省各庁の長は、第七十二条第一項の一般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第八十五条の基準若しくは第九十五条第一項の指名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定め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定めようとする事項が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であるときは、当該協議は、その資格の基本となるべき事項についてあれば足りる。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의 재무대신과의 협의）

제102조의 4 각성 각청의 장은 계약담당관 등이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경쟁에 참가할 자가 소수로서 일반경쟁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있어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
2.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관계 업자가 공모하여 일반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 등의 공사 혹은 제조 또는 특수한 품질의 물건 등의 매입으로서 검사가 현저히 곤란할 것

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국가의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3. 계약의 성질 혹은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에 따라 경쟁에 부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할 때
4.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현재 계약 이행 중인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에 직접 관련되는 계약을 현재 이행 중인 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리할 것

나. 수의계약에 따를 때에는 시가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을 것

다. 매입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량으로서 분할하여 매입하지 아니하면 판매 기피, 그 밖의 이유에 따라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을 것

라. 신속히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할 기회를 잃거나 현저히 불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될 우려가 있을 것

5. 제9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

6.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

7. 제99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99조의 2 또는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고자 할 때

(指名競争に付し又は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場合の財務大臣への協議)

第百二条の四　各省各庁の長は、契約担当官等が指名競争に付し又は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あらかじめ、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契約の性質又は目的により競争に加わるべき者が少数で一般競争に付する必要がない場合において、指名競争に付そうとするとき。

二　一般競争に付することを不利と認めて指名競争に付そ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不利と認める理由が次のイからハまでの一に該当するとき。

イ　関係業者が通謀して一般競争の公正な執行を妨げる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こと。

ロ　特殊の構造の建築物等の工事若しくは製造又は特殊の品質の物件等の買入れであつて検査が著しく困難であること。

ハ　契約上の義務違反があるときは国の事業に著しく支障をきたすおそれがあること。

三　契約の性質若しくは目的が競争を許さない場合又は緊急の必要により競争に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とき。

四　競争に付することを不利と認めて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不利と認める理由が次のイからニまでの一に該当するとき。

イ　現に契約履行中の工事、製造又は物品の買入れに直接関連する契約を現に履行中の契約者以外の者に履行させることが不利であること。

ロ　随意契約によるときは、時価に比べて著しく有利な価格をもつて契約をすることができる見込みがあること。

ハ　買入れを必要とする物品が多量であつて、分割して買い入れなければ売惜しみその他の理由

により価格を騰貴させるおそれがあること。

ニ　急速に契約をしなければ、契約をする機会を失い、又は著しく不利な価格をもつて契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こと。

五　第九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指名競争に付そうとするとき。

六　第九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随意契約によ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指名競争に付そうとするとき。

七　第九十九条第一号から第十八号まで、第九十九条の二又は第九十九条の三の規定により随意契約によろうとするとき。

(각성 각청 조직 상호 간의 계약에 준하는 행위)

제102조의 5 각성 각청의 조직 상호 간에 행하는 계약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의 예에 따라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2조 제2항(제9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의 심사
2.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3. 계약서의 작성
4. 경쟁에 부치는 것

(各省各庁の組織相互間の契約に準ずる行為)

第百二条の五　各省各庁の組織相互の間において行なう契約に準ずる行為については、契約の例により取り扱うものとする。ただし、次に掲げる行為は、行なわないことができる。

一　第七十二条第二項(第九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競争に参加する者に必要な資格の審査

二　入札保証金又は契約保証金の納付

三　契約書の作成

四　競争に付すること。

[별첨1]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에 대하여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에 대하여

문서번호: 헤이세이 11년(1999년) 4월 8일 장회 제1193호
발신: 대신관방 회계과장에서 각 부국장 앞
일부 개정: 헤이세이 13년 1월 9일 (재회 제53호), 헤이세이 13년 12월 26일 (재회 제2857호), 헤이세이 21년 6월 11일 (재회 제1310호), 레이와 원년(2019년) 5월 13일 (재회 제2124호)

예산결산 및 회계령(쇼와 22년 칙령 제165호) 제85조(동령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헤이세이 11년 4월 8일
대장대신 미야자와 기이치 (宮沢 喜一)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

재무성 소관에 속하는 공사 또는 그 밖에 도급계약(예정가격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에 관하여, 상대방이 될 자의 신청에に係る(따른) 가격에 따라서는 그 자에 의해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동령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기준은, 계약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사의 도급계약
계약마다 10분의 7.5에서 10분의 9.2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관 등이 정하는 비율을 예정가격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2. 그 밖에 도급계약
계약마다 예정가격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타 성청에 지출부담행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성청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부 칙 (헤이세이 11년 4월 8일 장회 제1193호)

이 기준은 헤이세이 11년 5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헤이세이 13년 1월 9일 재회 제53호)

이 개정 기준은 헤이세이 13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헤이세이 13년 12월 26일 장회 제2857호)

이 개정 기준은 헤이세이 14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헤이세이 21년 6월 11일 장회 제1310号)

이 개정 기준은 헤이세이 21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레이와 원년 5월 13일 장회 제2124호)

이 개정 기준은 레이와 원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 통달의 발출 시점에 이미 입찰에 부쳐져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첨2]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의 운용방침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85조의 기준의 운용방침 등에 대하여 (통달)

1999년 4월 8일 장회(蔵会) 제1193호 / 최종개정: 2026년 3월 31일 재회(財会) 제1605호

개정 이력

- 평13. 1. 9 재회 제53호
- 평13.12.26 재회 제2860호
- 평20. 6.27 재회 제1498호
- 평21. 6.11 재회 제1313호
- 평23. 6.30 재회 제1462호
- 평25. 5.23 재회 제1141호
- 평26. 6.30 재회 제1420호
- 평27. 3.26 재회 제895호
- 평28. 3.23 재회 제1155호
- 평29. 3.17 재회 제1125호
- 영원. 5.13 재회 제2125호
- 영원. 5.29 재회 제2351호
- 영4. 3. 9 재회 제884호
- 영8. 3.31 재회 제1605호

예산결산 및 회계령(이하 "예결령"이라 한다) 제85조의 기준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8일자 장회 제1193호로 통지한 바 있으나, 이 기준의 운용방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람.
아울러 「'원활한 가격전가 등에 이바지하는 적정한 저낙찰가격조사의 실시 등에 대하여(요청)'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2025년 12월 16일자 재계 제4654호) 1.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람.

1. 기준의 운용방침

기준에서 정하는 「계약마다 10분의 7.5에서 10분의 9.2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관 등이 정하는 비율」의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산정 방법

예정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다음 각 호에掲げる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합계액에 예정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 한다. 다만, 그 비율이 10분의 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9.2로 하고, 10분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분의 7.5로 한다.

1. 직접공사비 금액에 10분의 9.7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공통가설비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3. 현장관리비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4. 일반관리비 금액에 10분의 6.8을 곱하여 얻은 금액

나.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가'의 산정 방법과 상관없이 10분의 7.5에서 10분의 9.2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한다.

(주) 용어의 정의

「직접공사비」, 「공통가설비」,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아래 요령 등의 예에 따른다.

1. 「토목청부공사 공사비 적산요령」(1967년 7월 20일자 건설성 관기술 제34호)
2. 「공공건축공사 적산기준」(2003년 3월 31일자 국영계 제196호)

2. 사무절차

(1) 조사기준가격의 산출 및 예정가격조서 기재

계약담당관 등은 계약마다 기준 운용방침에 따라 산정한 비율 또는 기준에 정한 비율을 예정가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산출하거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산출액에서 해당 산출액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예결령 제79조의 「예정가격을 기재한 서면(이른바 예정가격조서)」에 「(조사기준가격 ○○엔)」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전 안내

계약담당관 등 또는 입찰집행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사전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예결령 제85조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계약담당관 등이 미리 설정한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입찰을 한 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낙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나.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 결과를 보류한다는 점 및 그 경우의 결과 통지 방법.

다.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예결령 제8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계약담당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의 사항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는 적산자료 등의 상세를 제시하고 사후 사정청취 등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

라. 적산자료 등의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

마. 적산자료 등의 제출·설명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으로 보아 낙찰자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3) 입찰의 집행

입찰 결과 조사기준가격을 하회하는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집행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최저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 및 그 가격을 발표함과 동시에, 「입찰 결과를 보류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예결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낙찰자는 추후 결정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입찰을 종료한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 조사의 실시

계약담당관 등은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한 자에 대해, 그 가격으로는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담당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입찰자로부터의 사정청취, 관계기관 문의 등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1. 그 가격으로 입찰한 이유
2. 계약대상 공사 인근의 보유 공사 현황
3. 계약대상 공사와 관련된 보유 공사 현황
4. 계약대상 공사 장소와 입찰자의 사업소, 창고 등과의 관련성 (지리적 조건)
5. 보유 자재 현황
6. 자재 구입처 및 구입처와 입찰자의 관계
7. 보유 장비 수량 현황
8. 노무자의 구체적 공급 전망
9. 과거 시공한 공공공사명 및 발주자
10. 경영 내용
11. ①부터 ⑩까지의 사정청취 결과에 대한 조사·검토

나.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

1. 그 가격으로 입찰한 이유 (필요시 입찰가격 내역서 제출 요구)
2. 해당 계약의 이행 체제
3. 해당 계약기간 중 다른 계약의 수주·이행 현황
4. 보유 장비 등의 현황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과거 이행한 계약건명 및 발주자
6. 경영 내용
7. ①부터 ⑥까지의 사정청취 결과에 대한 조사·검토
8. 신용 상태
9. 기타 필요한 사항

12. ⑨의 공공공사 성적 현황
13. 경영 상태 (거래 금융기관, 보증회사 등에 확인)
14. 신용 상태 (건설업법 위반 여부, 임금 체불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현황 등)
15. 기타 필요한 사항

(5) 조사 결과,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계약담당관 등은 조사 결과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한 자에 의해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 즉시 해당 낙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기타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낙찰 결정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사 결과,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가. 계약담당관 등은 조사 결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의해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 결과 및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4부를 작성하여, 재무성 소관 회계사무취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국장이 지정한 계약심사위원(3명)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아울러 각 부국장은 계약심사위원에 대해 관직 지정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한다.

나. 계약심사위원의 심사 및 의견 표시
계약심사위원은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은 다수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의견을 표시한다.

다. 계약심사위원의 의견에 기반한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관 등은 계약심사위원이 표시한 의견 중 2명 이상의 의견이 계약담당관 등의 의견(그 가격으로는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제한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고 예정가격 제한 범위 내 가격으로 입찰한 다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이하 "차순위자"라 한다)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차순위자가 조사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입찰자인 경우에는 (4) 이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 등은 계약심사위원이 표시한 의견 중 2명 이상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데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라.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의 통지
계약담당관 등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

1. 해당 낙찰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
2.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으나 낙찰자가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되지 못한 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낙찰 결정이 있었음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사 대상이 된 입찰에 대한 공표

상기 (5) 및 (6) 라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낙찰 결정이 있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8) 재무대신 및 회계검사원에 대한 서류 제출

계약담당관 등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쟁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 및 자기 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계약심사위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신관방 회계과장을 거쳐 재무대신 및 회계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독 및 검사의 강화

조사기준가격을 하회한 입찰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감독 및 검사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